이사회 규정

제정 2012. 5.23 개정 2014. 6.18 시행 2014. 6.18 개정 2015. 2.12 시행 2015. 2.12 개정 2015.12.21 시행 2015.12.22 개정 2017. 3.22 시행 2017. 4. 1 개정 2017.11.22 시행 2017.12. 1 개정 2020. 1.22 시행 2020. 1.23 개정 2022. 8.24 시행 2022. 9. 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이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제3조(구성) ①이사회는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다.
 - ②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이 되며,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.
 - ③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직제상의 차하위 상임이사, 선임비상임이사,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- 제3조의2(노동이사제)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1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사람(이하 "노동이사"라 한다)이 이사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

2022.8.24.>

- ②<삭제 2022.8.24.>
- ③<삭제 2022.8.24.>

[본조신설 2020.1.22.]

- 제4조(부의절차)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담당이사 또는 감사 명의로 이사회 상정안을 작성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7.11.22>
 - ②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20일 이전으로 한다.
 - ③이사회의 간사는 이사회 운영 사무를 담당하는 팀이 속한 실· 국장이 된다.
 - ④간사는 의안을 접수부에 기록하고 부의번호를 표기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와 함께 그 의안 사본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각 구성원이 열람가능토록 배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전까지로 한다.
 - ⑤간사는 필요시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안과 관련된 보고서 등 세부자료를 주무부서에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, 주무부서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.
 - ⑥부의안건 중 간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상정안의 경우는 이사회의 양해를 구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- 제5조(이사회 소집) ①정기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해당 월에 의결 또는 보고안건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 - ③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2.8.24.>
- 제6조(의안설명) ①의안설명은 해당의안의 상정자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 - ②이사회 구성원 또는 간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정된의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구두, 유선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통신수단을 통해 관련 자료를 주무부서에 요청하거나 주무부서의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의결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2022.8.24.>
 - ③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<개정 2022.8.24.>
 - 1. 노동이사 또는 노동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

계가 있는 경우

- 2. 노동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
- ④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8.2
-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8.2
- ⑥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관련하여서는「상법」제391조 제2항을 준용한다. <제3항에서 이동 2022.8.24.>

제8조(의결사항)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- 2.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
- 3. 결산
- 4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
- 5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공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
- 6. 방송광고요금의 변경
- 7. 방송광고 수수료 제도의 변경
- 8. 손익금의 처분
- 9.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·출연 및 채무보증

- 10. 정관의 변경
- 11. 사규의 제정과 변경
- 12. 임원의 보수
- 13. 사장 또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약안
- 14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
- 15. 다른 법령 및 공사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
- 16.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- 17.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국정감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- 2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
- 3. 감사규정에 의해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및 연간감사보고서
- 4. 경영평가 결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
- 5. 예산운영 실적 분석 등 기타 규정에서 보고토록 한 사항
- 6.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정부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사항
- 7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- ③제1항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상정한다.

- 1. 제1항제1호의 경영목표의 경우는 다음연도 또는 이를 포함한 3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변경사항을, 예산·운영계획의 경우는 예산·운영계획의 확정사안 및 변경사항으로 한다.
- 2. 제1항제4호 기본재산은 고정자산 중 토지, 건물 및 산업재산권으로 한다.
- 3. 제1항제5호 장기차입금의 범위는 결산일 또는 그 다음날을 기준 으로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으로 외국차관을 포함한다.
- 4. 제1항제6호의 방송광고요금의 변경은 「방송법시행령」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유형 요금 중 프로그램광고요금의 일괄변경, 프로그램광고 기준요금 재산정, 토막광고요금의 일괄변경,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요금책정 방식의 일괄변경을 말한다.
- 5. 제1항제7호의 방송광고 수수료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」 제16조의 방송광고 수수료를 말한다.
- 6. 제1항제8호의 손익금의 처분은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」제31조를 따른다.
- 7. 제1항제11호의 규정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한정한다. 단, 관련 법 규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과 단순한 용어의 정비, 자구·체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6.18.> <개정 2017.3.22.>

가. 이사회 규정

나.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- 다.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
- 라. 직제규정
- 마. 복무규정
- 바. 인사규정
- 사. 보수규정
- 아. 회계규정 및 예산규정
- 자. 사규의 제정과 폐지
- 8. 제1항제12호의 임원의 보수는 사장,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말한다.
- 제9조(제안)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소집의안 이외의 안건을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.
- 제10조(의견수렴) 간사는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사항 또는 경영에 관한이사회 구성원의 전문가적 제언 또는 자문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실무팀을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거나이행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의사록) ①이사회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경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 및 결과,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.
 - ③이사회 의사록 및 부의 원안 등 의결서는 간사가 영구보존토록하며

- 그 의결사항은 의안상정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- ④이사회 의사록은 경영공시토록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사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12조(비상임이사 회의) ①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·주재할 수 있다.
 - ②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③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 호선한다.
 - ④선임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⑤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.
 - ⑥사장은 제5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위원회) ①이사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이사회 내에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「상법」제393조의2(이사회내의 위원회)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이사와 감사의 책임) 이사 및 감사의 책임과 관련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5조를 따른다.
- 제15조(해임요청)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6조(감사요청) ①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 대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었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②감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 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준용규정) ①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.
 - ②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제18조(위임 규정)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

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< 2014.6.18.>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2.12.>

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21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3.22.> (예산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사규의 개정) ① 생략

②「이사회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3항 제7호 아목 "회계규정"은 "회계규정 및 예산규정"으로 변경한다.

부 칙<2017.11.22>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2.26>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8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노동이사제에 관하여 최초의 노동이사가 임명되는
때까지는 제3조의2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
규정에 의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<개정 2015.2.12> <개정 2015.12.21>

- 표 지 -

의안번호	제 ○○○○ 호
의 결	0000.00.00
년 월 일	(제 ○○ 차)

의 안 명

상 정 자	
상 정 일	0000.00.00

- 내용-
- 1. 의결(보고)주문
- 2. 제안이유

3. 주요내용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(별지 제2호 서식)

제 차 이사회 의사록

ㅇ일 시: 년 월 일 시

○ 장 소:

이 이사 총수:

ㅇ 출석이사수:

1. 의 안:

2. 회의전말:

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 서명 날인함.

사 장 인 이 사 인 감 사 인 0] 사 인 인 인 0] 사 사 이 이 사 인 사 인 이 0] 사 인 이 사 인 이 인 사 인 이 사